2019-○○○ 해임 처분 취소 또는 감경 청구

처분 요지	학생 폭행으로 품위유지의 의무 위반, 성실 및 복종 의무 위반 등 교원으로서의 의무를 위반한 사실이 있음.
결정 요지	피청구인의 청구인에 대한 해임 처분에 대하여 양정과다로 판단을 한 교원소청심사위원회 결정의 기속력에 반하는 것으로 위법하다.
관련 규정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제10조의3

청 구 인 : ○○○

소속 ○○중학교 직위 교사

피청구인 : 학교법인 ○○학원

피청구인이 2019. 7. 29. 청구인에게 한 해임 처분에 대해 청구인이 2019. 8. 22. 이의 취소를 구하는 소청심사를 청구하여 위원회는 심사를 거쳐 다음과 같이 결정한다.

주 문

피청구인이 2019. 7. 29. 청구인에게 한 해임 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사건 경과

가. 청구인은 2001. 3. 1. ○○중학교 교사로 신규 임용되어 이 사건 처분 시까지 근무하였다.

나. ○○경찰서는 2017. 9. 14. 청구인에 대한 공무원범죄 수사개시(죄명: 폭행) 통보를 하였고, 피청구인은 2017. 11. 13. 청구인에게 직위해제 처분을 하였다.

다. ○○교육지원청은 2018. 2. 27. 국민신문고 민원과 관련하여 청구인에게 경고 조치를 요청하였고, 피청구인은 2018. 3. 29. 청구인에게 경고 처분을 하였다.

라. ○○검찰청은 2018. 6. 21. 청구인의 폭행혐의에 대해 구약식 처분을 하였다.

마. 피청구인은 2018. 7. 25. 교원징계위원회에 청구인에 대한 징계의결을 요구하였으며, 교원징계위원회는 2018. 8. 2. 청구인에 대하여 '해임'을 의결하였고, 피청구인은 2018. 8. 17. 청구인에게 '해임' 처분을 하였다.

바. 청구인은 2018. 9. 11.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 피청구인의 '해임' 처분에 대한 소청심사를 청구하였다.

사. ○○법원은 2018. 10. 18. 청구인의 폭행혐의에 대해 약식명령(벌금 50만 원) 처분을 하였다.

아. 교원소청심사위원회는 2018. 11. 21. 피청구인이 청구인에게 한 '해임' 처분을 취소하였다.

자. 피청구인은 2019. 2. 11. 청구인에게 '해임' 처분을 하였고, 교원소청심사위원회는 2019. 5. 22. 피청구인이 청구인에게 한 '해임' 처분을 취소하였다.

차. 피청구인은 2019. 6. 26. 교원징계위원회에 청구인에 대한 재징계의결을 요구하였고, 교원징계위원회는 2019. 7. 18. 청구인에게 '해임'을 의결하였고, 피청구인은 2019. 7. 29. 청구인에게 '해임' 처분을 하였다.

2. 처분 사유

가. 징계 사유

1) 청구인은 2016년 10월경 ○○중학교 3층 음악실 내에서 3학년에 재학 중인 피해자 ○○(남, 15세)학생을 폭행을 하여 ○○법원 약식명령을 받았다.(이하 '제1징계사유'라 한다).

2) 청구인은 2015~2016학년도 음악교과목 '기악' 및 '가창' 항목 수행평가에서 평가기준에 0점 처리기준이 없음에도 2015학년도 2학기 중간고사에서 2-1 ○○ 외 8명에게 기악 및 가창 0점을 부여하고, 2016학년도 1, 2학기 기말고사에서 1-1 ○○ 외 8명에게 기악 및 가창 0점을 부여하여 평가기준에 맞지 않게 점수를 부여함으로써 공정하지 못한 평가를 한 사실이 있다. 2017학년도부터는 수업연계 과정중심 수행평가 의무 반영 확대로 전 교과 수업시간 중에 과정중심으로 평가하여야 함에도 2017학년도 2학기 기말고사에서 3-1 ○○ 학생에게 0점을 부여하여 상당한 불이익을 초래하였다. ○○교육청 중학교 학업성적관리시행지침에는 '수행평가는 교과목의 성적을 고려하여 합리적인 세부평가 기준을 작성 공개한 후 평가하여 공정성과 객관성이 유지되도록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2017학년도부터는 동 지침에서 '수행평가는 교과 수업 시간 중에 과정을 중심으로 평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라고 안내되어 있는데도 청구인은 2015학년도 2학기와 2016학년도 1학기, 2학기 수행평가에서 평가기준에 0점 처리 기준이 없음에도 평가의 예측성, 투명성, 공정성을 무시하고 그 기준을 위배하여 다수의 학생에게 0점을 부여한 사실이 있다.(이하 '제2징계사유'라 한다)

3) 청구인은 2017학년도 선도위원회를 개최하면서 개최여부 결정은 전자문서를 통한 결재를 하여야 하며 개최 후에 회의록을 작성하도록 되어 있음에도 2017. 7. 3.과 2017. 7. 6.에 선도위원회를 개최하면서 운영절차 준수 소홀로 청구인에 대하여 ○○교육지원청으로부터 장기간 감사를 받았으며,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의 의무) 위반으로 신분상 처분요구 공문이 내려왔다. 이에 법인이사회를 개최하여 청구인에게 2018. 3. 29. 경고장을 발송한 사실이 있고, 청구인은 2015. 12. 30. ○○중학교장으로부터 학교업무 비협조와 품위유지 의무 위반으로 경고장을 받은 사실이 있다.(이하 '제3징계사유'라 한다)

4) 청구인은 2015. 10. 27. ○○고 3학년 고입 원서 대장을 학교장에게 사전 보고와 결재도 없이 행정실에 요구하여 직인을 찍어 간 사실이 있고 학교장이 이의를 제기하자 뒤늦게 2015. 10. 28. 15시 30분에 학교장에게 사후 결재를 요청한 사실이 있어 학교장이 경고를 한 바 있다.(이하 '제4징계사유'라 한다)

5) 청구인은 2015. 12. 29. ○○중학교 작은 음악회 행사 시 학교장의 명령에 따라 다른 교사들은 퇴근을 하지 않고 남아서 학교 행사에 적극 협조를 하였음에도 청구인 혼자만 학교장에게 사전 어떤 보고도 없이 고의로 퇴근을 해 버린 행위로 2015. 12. 30. 학교장으로부터 경고장을 받은 사실이 있다.(이하 '제5징계사유'라 한다)

나. 청구인의 진술

청구인이 일상 등을 반성하고 있고 자신을 돌아보는 기회가 되었으며 위원님께 번거롭게 해서 죄송하다.

다. 징계위원회의 판단

1) 청구인은 징계의결요구서 등의 폭행 사실과 2019. 7. 18. ○○학원교원징계위원회에서 본인의 진술내용과 제반 서류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 판단한 결과 폭행으로 인한 품위유지 의무 위반, 성실의 의무 위반, 복종 의무 위반 등 교원의 의무 위반이 명백하고 학교에 지속적이고 비협조적인 행동 등에 관하여 교사로서 성실과 의무를 다하지 못한 것으로 판단되어지며,

2) 청구인은 2019. 5. 22. 교원소청심사위원회 심사일에 출석을 하고 돌아온 바로 다음날 2019. 5. 23. 자료와 관련하여 현 ○○중학교 교장에게 소송을 하겠다고 핸드폰으로 문자를 보낸 사실이 있다. 이는 징계를 하게 된 원인이 온전히 본인에게 있음에도 이를 부인하고, 원인을 제3자나 외부요인으로부터 찾으려고 하는 태도로 보이고 동시에 학교장에 대한 협박성 문자라고 판단되어지며,

3) 징계사유 두 번째 성적처리와 관련하여 ○○가 3-1반 ○○ 학생 성적처리를 ○○ 본인이 직접 했다는 사실을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서 이미 인정을 한 사실임에도 청구인은 반성은커녕 2019. 7. 18. ○○교원징계위원회에 출석하여 한 발언에는 현 ○○중학교의 교장이 2019. 5. 22. 교원소청심사위원회 심사 당일 ○○ 학생 성적처리와 관련된 허위 사실 확인서를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 제출했다고 변명된 주장을 하였고,

이는 학교장의 정당한 증거 자료 제시임에도 학교장이 허위로 사실확인서를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 제출했다는 청구인의 발언으로 보아 전혀 반성의 뜻이 없는 것이라고 판단되어지며,

2019. 5. 22.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 출석하였을 때, 다섯 번째 징계사유 중에 ○○중 작은음악회 행사 당일 학교장에게 보고도 하지 않고 행사에 참여하지도 않고 자의적으로 퇴근을 해버린 사실에 대하여 청구인이 교감에게 말을 하고 갔다고 진술한 사실이 있으므로, ○○중학교 작은 음악회 개최 당시(2019. 12. 29.) ○○중학교는 교감이 공석이었으므로 이는 명백한 허위 진술임이 인정이 되고,

2019. 7. 18. ○○학원 교원징계위원회에서 징계대상자인 청구인에게 음악회 행사 당일 교감에게 보고하고 갔다는 그 사실을 재차 묻자 이에 대해 청구인의 답변은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서는 그렇게 말했었는데 나중에 지나고 보니까 교감이 없었고 다른 교사한테 말을 하고 갔다고 다시 말을 바꾸는 등 명백한 허위 진술을 함이 인정되고,

이는 진실성의 결여와 반성의 의지보다는 계속적인 변명과 허위 진술만을 일삼고 있음으로 판단되어진다.

4)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서도 청구인에 대한 다섯 가지 징계 사유가 모두 인정이 되었고 폭행은 어떠한 이유로도 정당화될 수 없다고 판단되어지며, 청구인의 성실하지 못한 태도는 한두 번도 아니고 반복적이며 지속적이고 교사가 변화되지 않고 변명으로 일관하는 태도가 계속되었다.

학교장의 정당한 지시를 어기고 학교 업무에 협조하지 않고 정해진 원칙과 규칙을 지키지 않는 것과 교사가 성실하지 못한 행동으로 물의를 일으킨 점은 교사의 본분에도 상당히 어긋나는 것으로 판단되어지며, 이는 신성한 교육의 장에서 배제되어야 하며, 미래의 주인공인 학생들의 가치관과 인성을 심각하게 훼손하고 공정한 경쟁을 하지 못하게 함으로써 학생들에게 심각한 불이익을 초래하였으며, 교육부의 성적 부여 원칙과 공정한 경쟁 규칙을 어기고 자의적이고 사적인 감정으로 성적을 부여했다고 볼 수밖에 없으며 시간이 많이 지났음에도 청구인

의 행동은 조금의 변화도 없고 국민신문고에 외부 민원이 제기될 만큼 학교의 명예를 실추시켰고, 신성한 교육 기관에서 있어서는 안 될 일이며, 교사 본인이 이행해야 할 여러 가지 업무에 고의로 매우 비협조적이고 오랫동안 성실하지 못한 근무태도로 일관해 왔으므로, 관할청의 감사 결과와 징계 대상자의 지속적이고 누적된 비위 행위에 대하여 종합적으로 판단할 때 사립학교법 제61조를 심각하게 위반하였다.

청구인은 폭행 구약식 처분뿐만 아니라 품위유지 의무 위반과 성실의무 위반과 복종의무 위반 등 학교의 명예를 실추시키는 등의 여러 사안들이 입증되어 교사로서 자질이 없다고 판단되며, ○○법원 판결문에 나타난 명백한 폭행 사실은 신성한 교육의 장에서 더 이상 두 번 다시 일어나서는 안 되며 청구인이 징계위원회에 출석하여 발언할 때에는 허위 진술과 변명 등으로 일괄하여 도무지 양심과 진실성이 없다고 판단된다.

라. 이와 같은 청구인의 행위는 사립학교법 제55조에 따라 준용되는 국가공무원법 제63조(품위유지의 의무) 위반,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의 의무) 위반과, 국가공무원법 제57조(복종의 의무) 위반에 해당하며 교육공무원법 제51조(징계의결의 요구) 제1항과 교육공무원 징계령 제6조(징계의결의 요구) 징계사유에 해당되므로 엄중 문책함이 마땅하여 '해임'으로 의결한다.

3. 청구인 주장

가. 이 사건 처분의 위법성

이 사건 처분 사유는 2차 해임 처분과 동일하며 해당 처분 사유를 이유로 한 해임 처분의 위법·부당성 여부에 대해서는 이미 소청심사위원회가 2019-○○○ 사건에서 해임 처분이 과도하다는 판단을 하여 해임을 취소하는 결정을 하였음에도, 피청구인이 또다시 해임 처분을 한 것은 교원소청심사위원회 결정의 기속력에 반하는 위법한 처분이다.

또한 새로운 징계사유를 추가하여 처분을 하고자 하면 징계의결요구 및 징계의결요구사유의 통지 절차 등을 거쳤어야 함에도 피청구인은 이러한 절차를 거치지 않은 채 해임 의결을 하며 징계위원회에서 당초 징계사유로 삼지도 않은 감정적인 내용들을 판단 이유로 삼은 것으로 위법하다.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청구인을 학교에서 축출하겠다는 오기와 보복적 감정에서 이 사건을 처분을 한 것으로 위법·부당하므로 취소하여 주기 바란다.

4. 판단

가. 기속력 위배 여부

1) 관련 판례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제10조 제2항은 교원소청심사위원회의 결정은 처분권자를 기속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교원소청심사위원회의 결정이 처분권자에 대하여 갖는 기속력은 결정의 주문에 포함된 사항뿐 아니라 그 전제가 된 요건 사실의 인정과 판단, 즉 처분 등의 구체적 위법사유에 관한 판단을 포함한다(대법원 2013. 7. 25. 선고 2012두12297 판결 등 참조).

재결에서 불복사유가 인정되어 처분이 취소되었음에도 처분청이 동일한 사실에 관하여 처분을 되풀이하는 것은 위법하다(대법원 1986. 5. 27. 선고 86누127 판결 참조).

2) 이 사건 처분이 교원소청심사위원회 기속력에 반하는지 여부

가) 청구인은 이 사건 처분 사유는 2차 해임 처분 사유와 동일하고,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서 2차 해임 처분에 대해 2019. 5. 22. 취소 결정을 하였음에도 피청구인이 다시 청구인에 대해 해임 처분을 한 것으로 이는 교원소청심사위원회 결정의 기속력에 반하는 것으로 위법하다고 주장한다.

나) 이에 대해 피청구인은 징계위원회에서 청구인의 징계사유 전후에 저지른 비위행위 사실, 청구인의 태도 등을 징계양정에 참작하여 이 사건 해임 처분을 한 것으로 위법하지 않다고 답변하고 있다.

다) 살피건대, 교원소청심사위원회 결정서에 따르면 교원소청심사위원회는 2019. 5. 22. 2019-○○○ 사건에 대하여 청구인의 징계사유가 대부분 인정되나 청구인에게 배제징계인 해임 처분을 한 것은 다소 과중하다며 취소 결정을 한 사실이 있으며, 피청구인이 2019. 7. 29. 이 사건 해임 처분을 하면서 청구인에 대한 징계사유로 삼은 것은 2019. 5. 22.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서 취소 결정을 한 2019-○○○ 해임 사건의 징계 사유와 동일하므로, 이 사건 해임 처분은 2019. 2. 11. 피청구인의 청구인에 대한 해임 처분에 대하여 양정과다로 판단을 한 교원소청심사위원회 결정(2019-○○○ 사건)의 기속력에 반하는 것

으로 위법하다.

5. 결론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이 사건 해임 처분은 위법하므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정확한 판단 바른 행정 - 온라인 행정심판 http://www.simpan.go.kr